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소화전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필요 등 기술 기준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최고사용압력 규정(안 제3조)
- 나. 내압력 기준 강화(안 제6조)
- 다. 옥외소화전의 밸브대강도시험 신설(안 제8조)
- 라. 옥외소화전의 재질 강화 (안 제9조제2항제1호)
- 마. 고무재료의 기준 강화 (안 제9조제3항)
- 바. 염수분무시험 신설 (안 제10조)
- 사. 핸들의 직경 규정 (안 제12조제13호)
- 아. 개폐핸들의 작동토크 규정 (안 제14조제2항)
- 자. 옥외소화전의 캡 높이 규정 (안 제16조제2항제8호)
- 차. 옥외소화전의 쇠줄 지름 규정 (안 제16조제2항제9호)
- 카. 작동시험 신설 (안 제19조)
- 타. 작동토크시험 신설 (안 제20조)
- 파. 도막두께시험 신설 (안 제21조)
- 하. 도막충격시험 신설 (안 제22조)